

이 자료는 '04년 5월 4일(火) 조간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報 道 資 料

제 목: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

◇ 재정경제부는 기업창업과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,
서민·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조세측면에서 뒷받침하기
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함

◇ 이는 올해의 주요업무계획(1.28) 및 그간 경제장관
간담회에서 결정·발표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6월
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

◇ 改正案 主要内容

<일자리 創出 및 景氣回復 지원>

1.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·법인세를
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%~100% 감면
2.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3.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
4.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6개월 연장
5.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
6.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

<文化産業등 서비스산업 지원>

7.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
8.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의 손금인정한도 확대
9.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에 영화·광고업 등 5개 서비스업종 추가

<서민·중산층 生活安定 지원>

10. 연로자·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
11. 아파트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12.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

資料生産 : 조세지출예산과(소관사항 1, 3, 4, 6, 9)

☎ 2110-2311~3(과장 성수용, 서기관 고광호)

소득세제과(소관사항 10)

☎ 2110-2095~6(과장 이경근, 사무관 변광욱)

법인세제과(소관사항 2, 5, 7, 8)

☎ 2110-2317~9(과장 변상구, 사무관 김건영)

재산세제과(소관사항 12)

☎ 2110-2321~3(과장 김문수, 사무관 박춘호)

소비세제과(소관사항 11)

☎ 2110-2324~6(과장 김낙희, 사무관 이호섭)

財政經濟部

稅制總括審議官

財産消費稅審議官

公 報 官

1.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☐ 11개 업종*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% 감면 * 금번 개정안에서 5개 서비스 업종 추가 → 모두 16개 업종	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 ○ 적용대상 -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하여도 적용 ○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%~100% 감면 ○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

※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기업이 선택 적용

<구체적 적용방법>

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

-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16개 업종*과 고용창출효과를 감안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

* 제조업, 광업, 부가통신업, 연구및개발업, 과학및기술서비스업, 전문디자인업, 방송사업, 방송프로그램제작업, 엔지니어링사업,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 영업, 물류산업, 영화산업, 호텔업, 광고업, 국제회의업, 노인복지업

- 상시종업원 수가 최소고용인원기준* 이상인 기업

* 제조·광업 : 10인, 서비스업 : 5인

☐ 고용증가에 따른 감면율

- 기본감면율(50%) + 추가감면율(매년 고용증가율 $\times$ 0.5)
→ 최대 100% 감면

< 적용사례 >

직전년도보다 종업원이 50% 늘어난 경우(10명→15명)

- 기본감면율 50%에
- 고용증가율 50%에 0.5를 곱하여 추가감면(총 75%감면)

☐ 지방세 감면

-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 100% 감면, 종합토지세·재산세 5년간 50% 감면

※ 수도권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와 인접 시·군) 내에서 창업한 기업은 제외

☐ 적용기한

- '04.7.1~'06.6.30 창업한 기업에 대해 적용

☐ 최저한세 적용은 배제되지만

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

☐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장하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·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

* 장부기장을 하지 않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

2.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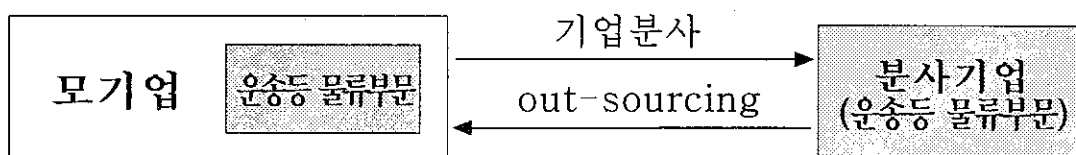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3)

- 모기업의 일부 부분을 떼어내어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
 -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
 -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%~100% 감면
 - 창업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
 - 기업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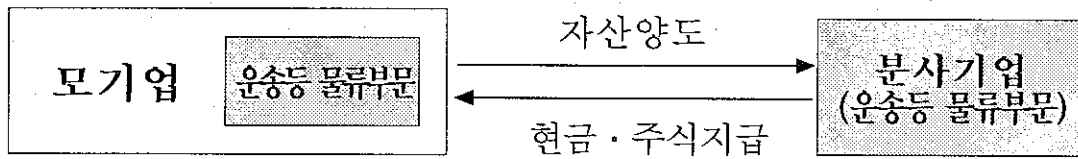
□ 고용창출형 분사기업

-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

(사례) 음료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운송·창고 등 물류부문을 떼어내어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



☐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



-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자산(토지, 건물, 기계장치, 차량 및 운반구 등)을 매각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50% 감면

☐ 분사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· 등록세를 2년간 100% 면제

※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감면 배제

☐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자산을 저가매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* 규정 적용배제

*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저가 ·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재계산

3.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8)

<3-①>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

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당해년도 상시
근로자 인원이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

- 추가고용인원 1인당 1백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
공제(세액공제)

- * 상시근로자 :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- 3개월 고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에서도 적용

<구체적 적용방법>

☐ 적용대상 기업

- 소비성서비스업과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
하는 업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(대기업, 중소기업,
개인기업)에 대하여 적용

☐ 적용방법

- 최저한세는 적용
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

☐ 고용창출형 창업·분사기업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과 중복해서 적용받지 못함

<적용례>

- 2004.1.1~2006.12.31까지 기간중 고용증가에 대하여 적용

<3-②> 설비자동화 또는 생산량의 감축 등으로 인하여
종업원을 감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
교대근무제 등을 통하여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
대하여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(1인당 50만원) 적용

<구체적 적용방법>

☐ 적용대상

- 제조업·광업·운수업·물류업 등의 업종으로서 일정기준
(예:100인)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적용

(사례)

- ☐ 1,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교대근무제를 변경하는 경우

변 경 전

1일 3조 3교대

1인당 1일 8시간 근무

< 3조 3교대 >

8시간	A조
8시간	B조
8시간	C조

⇒

변 경 후

1일 4조 2교대

1인당 1일 6시간 근무
(2일에 12시간 근무)

< 4조 2교대 >

오 전 (12시간)	A조	C조
오 후 (12시간)	B조	D조

(계산산식)

[(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/단축전 근무시간) × (총고용인원)
- 고용감소인원] × 50만원씩 공제

- ☐ 적용례 : 2004.1.1~2006.12.31까지 3년간

4.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6개월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26조)

현행	개정안
○ 제조업 등 27개 업종이 2003. 7.1 ~ 2004.6.30까지 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15%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	○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<u>2004.12.31까지 6개월 연장</u>

* '04.4.29(목) 보도참고자료 기재포

5.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19조 및 제120조)

현행	개정안
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 (paper company)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(CR Reits)에 대하여는 ○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·등록세 50% 감면 ○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(일반세율의 3배) 배제	☐ SOC건설등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인 <u>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(PFV)</u>에 대해서도 ○ 동일하게 <u>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배제</u>

<개정이유>

-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대규모 투자사업 활성화 지원
- 명목상의 회사(paper company)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이 유발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적용 제외

<시행시기>

- 공포일 이후 취득하거나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

6.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32조)

현 행	개 정 안
개인사업자가 여러가지 감면을 받더라도	최저한세율을 35%로 인하
○ 최소한 감면받기전 사업소득 세액의 <u>40%</u> 는 납부하여야 함	○ ----- ----- <u>35%</u> -----
○ 즉,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감면 합계액은 당초 낼 세금 (감면받기전의 세액)의 <u>60%</u> 를 초과할 수 없음	○ ----- ----- ----- <u>65%</u> ----- -----

* 법인기업의 최저한세율

- 일반법인 : 감면전 과세표준의 15%
- 중소기업 : 감면전 과세표준의 10%('03년 이전은 12%)

<개정이유>

- ☐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2% 既인하된 점등을 감안하여
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5%p 인하

<적용례>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7.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04조의9)

- (대상사업자) 영화·공연산업, 음반제작, 게임소프트웨어 사업자가
- (준비금설정액) 흥행의 성공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, 소득금액의 30%범위내에서 준비금설정시 손금으로 인정(과세소득에서 제외)
- (준비금의 사용) 준비금은 3년내에 당해 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하여야 하며, 3년내 미사용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함

<준비금 신설이유>

- ☐ 영화제작·공연등 문화산업의 경우 흥행에 성공하여 많은 소득을 올린 해에는 법인세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음
- ☐ 따라서, 영화제작사 등이 흥행소득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에는
 - 그 준비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제외(손금산입)하여
 -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

<시행시기>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(2004년)부터 적용

8. 문화예술관련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73조)

현 행	개 정 안
①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기부금 ○ 개인 및 기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경우 ○ 그 개인 및 기업의 <u>소득금액의 50%범위</u>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(또는 개인소득에서 공제)	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금액은 ○ 그 개인 및 기업의 <u>소득금액의 범위</u>내에서 전액 손금인정 (또는 개인소득에서 공제)
②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○ 기업이 비영리문화예술단체 (예 : 문화원, 예술의 전당등)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○ 그 기업의 <u>소득금액의 5% 범위</u>내에서 손금으로 인정	② 기업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○ 그 기업의 <u>소득금액의 8% 범위</u>내에서 손금으로 인정

<개정이유>

-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문화·예술을 지원

<시행시기>

-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(2004년)부터 적용

9.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영화·광고업등 5개 서비스업종 추가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6조)

현 행	개 정 안
☐ 제조·광업 등 11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 발생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% 감면	☐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☒ 영화산업·호텔업·광고업· 국제회의업·노인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

*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(11개업종)

: 제조업, 광업, 부가통신업, 연구및개발업, 과학및기술서비스업, 전문
디자인업, 방송사업, 방송프로그램제작업, 엔지니어링사업, 정보처리
및 컴퓨터운영업, 물류산업

<개정이유>

☐ 서비스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GDP중 서비스업 비중이
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

	(’70년)	(’02년)
○ 고용중 서비스업 비중 :	29%	64%
○ GDP중 서비스업 비중 :	43%	56%

* 지난 10년간(’92~’02) 업종별 고용인원증가

①농림·어업 △64만명 ②제조업 △74만명 ③서비스업 +448만명

<적용례> 공포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

10. 연로자·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88조의2)

현 행	개 정 안
☐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의 요건 ☐ 가입대상 : <u>65세이상연로자</u> , 장애인, 독립유공자등 ☐ 저축한도액 : 1인당 저축 원금 <u>2천만원이하</u> *03.12현재저축 실적 : 21조원(2백20만좌)	☐ 가입대상 연로자기준을 <u>60세 이상</u> 으로 확대하고 ☐ 저축가입 한도액을 <u>3천만원</u> <u>까지</u> 로 인상함

<개정 이유>

- ☐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일반적으로 정년이 60세임을 감안하여 퇴직연로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60세로 하향조정
- ☐ 연로자·장애인·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축한도를 3천만원까지로 인상함

<적용례> 시행일 이후 가입분 부터 적용
(기존 가입저축도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)

11. 아파트 警備用役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06조)

현행	개정(안)
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○ '03.12.31까지는 면제하다가 ○ '04.1.1부터 과세로 전환됨	☐ 공동주택 경비구역에 대하여도 아파트 일반관리구역과 동일하게 ○ '04.12.31까지는 모두 면제하되 ○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'05.1.1부터 과세

※ 공동주택 일반관리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

- 국민주택 규모 이하 : 면세
- 국민주택 규모 초과 : '04.12.31까지 면세 → '05.1.1이후 과세

<개정이유>

☐ 중산·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

* 세대당 연평균 2.3만원 부담

☐ 아파트 일반관리구역과의 형평성 유지

☐ 경비업체 등에 부가가치세가 전가됨에 따른 문제점
(경비원 급여 조정) 해소

<적용시기> :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

(2004.1.1 ~ 2004.6.30)부터 적용

12.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

(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88조의4)

현 행	개 정 안
□ <u>우리사주 조합원이</u> <u>우리사주를</u>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없으며 ○ 일반의 경우와 같음 - 상장주식·협회등록주식을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- 기타의 경우(비상장 주식양도)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· 대주주 : 20% · 중소기업 주주 : 10%	□ 퇴직하는 종업원이 <u>우리사주를</u> <u>우리사주조합에</u>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면제 <면제요건> · <u>우리사주조합을</u> 통하여 취득한 후 1년이상 보유 ·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 · 주식액면가액 합계액이 <u>1,800만원</u> 이하

<개정이유>

□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

- 퇴직종업원이 인출한 주식을 조합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종업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경영참여 촉진

※ 우리사주(ESOP :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) :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

이 자료는 '04년 5월 4일(화) 조간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— < 租稅特例制限法 改正(案)에 대한 > —

問 答 資 料

2004. 5

財 政 經 濟 部

資料生産 : 稅制室

< 목 차 >

1.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·법인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0%~100% 감면 (p.1)

- 1-① 고용창출형 창업·분사기업 세제지원 대상업종은? .. 1
- 1-② 소비성서비스업 등 창업·분사기업 지원대상에서
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는가? 2
- 1-③ 고용기준이 되는 근로자 3
- 1-④ 최소고용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? 4
- 1-⑤ 감면기간중 계속하여 최소고용기준을 유지하여야
하는가? 5
- 1-⑥ 창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발생
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... 5
- 1-⑦ 고용증가율을 직전과세연도 대비로 계산한다는데
직전과세연도에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? .. 6
- 1-⑧ 실제 고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? 7

2.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(p.3)

- 2-① 분사란 무엇인가? 8

3.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(p.5)

- 3-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은? 9
- 3-②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구체
적인 내용은? 10
- 3-③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계산사례 11
- 3-④ 창업하거나 폐업한 기업에 대한 적용은? 12
- 3-⑤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세액감면제도와 고용증대특별
세액공제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? 12
- 3-⑥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
두가지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? 13

5.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(p.8)

- 5-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무엇인가 ? 14

6.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(p.9)

- 6-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
있는가? 15

7.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(p.10)

- 7-① 문화사업준비금이 적용되는 문화산업은 ? 16
- 7-②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투자를 할 경우 세제상 혜택은 ? 16

8.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 확대 (p.11)

- 8-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란 무엇인가? 17
- 8-②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확대되는 문화 예술단체의 범위는? 17
- 8-③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무조건 기부금 한도가 8%로 확대되는가? 18
- 8-④ 소득금액의 50%범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 받는다는 의미는? 18

10. 연로자·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 (p.13)

- 10-①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천만으로 확대한 이유는? 19
- 10-② 생계형 저축의 가입연령을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? 20

- 10-③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
하향 등으로 늘어나는 세제 혜택은? 21
- 10-④ 현행 세금우대저축상품으로 무엇이 있는가? 22
- 10-⑤ 노인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? 23

11. 아파트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p.14)

- 11-①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
되는가? 24
- 11-② 부가가치세 면제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세대수는
얼마나 되는가? 24
- 11-③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세금부담은 얼마나 줄어
들게 되는가 ? 25
- 11-④ 2004.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아파트 경비용역과
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? 25

12.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(p.15)

- 12-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체계 26

1.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·법인세를
고용증가율에 따라 50%~100% 감면

1-① 고용창출형 창업·분사기업 세제지원 대상업종은?

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(16개업종)

- 제조업, 광업, 부가통신업, 연구 및 개발업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전문디자인업,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, 방송 프로그램제작업, 엔지니어링사업,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, 물류산업(11개업종)
- 영화산업, 호텔업, 광고업, 국제회의업, 노인복지업(5개업종)

* 금번 개정안에 포함

□ 고용창출효과를 감안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종

- 구체적인 업종은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되
- 소비성서비스업 등 지원의 실익이 크지 않은 업종은 제외

1-② 소비성서비스업 등 창업·분사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는가?

□ 『조세특례제한법』상 소비성서비스업

- 호텔 및 여관업(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)
- 일반유흥·무도유흥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
- 무도장, 도박장,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

□ 『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』상 풍속영업의 범위

-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업
-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, 이용업, 목욕장업중 특수목욕장업
-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, 노래연습장업 및 일반게임장업
- 체육시설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

□ 『중소기업창업지원법』상 창업지원 제외업종

- 숙박 및 음식점업 (55)
- 금융 및 보험업 (65~67), 부동산업 (70)
- 무도장 운영업 (88991), 도박장 운영업 (88995)
-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(88331, 88332)
- 미용·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 제외, 93)

1-③ 고용기준이 되는 근로자

□ 상시사용 종업원*으로 하되 다음은 제외

-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(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)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, 형제자매
- 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)
-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납부가 증명되지 않는 자

- * 상시사용 종업원 :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- 3개월고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판정기준에도 적용

<참 고>

*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(근로기준법 제21조)

-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(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)
- 퇴직금·유급휴일·연차유급휴가 규정(근로기준법 §25③) 및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됨(고용보험법 §8. 2호)
-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3개월이상,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

□ 상시사용 종업원수 계산

- 사업연도 매월말일 현재 상시사용 종업원수 평균
: 과세연도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합계 / 과세연도 월수

- 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(§5)상 계산방법 준용

1-④ 최소고용기준이 되는 과세연도는?

□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
기준으로 함

○ 다만, 창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
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이 최소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
○ 다음 과세연도에 기준 충족시에는 감면허용

⇒ 연도말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 첫해에 최소 고용인원
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

다음 과세연도까지 기준인원을 충족시에는 감면대상에
포함

1-⑤ 감면기간중 계속하여 최소고용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는가?

☐ 그렇다

-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받지 못함
- 다만,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50% 감면

1-⑥ 창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

☐ 고용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 감면을 50%만 감면

1-⑦ 고용증가율을 직전과세연도 대비로 계산한다는데
직전과세연도에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?

☐ 최소고용기준으로 계산함

<사 례>

<u>'04 년</u>	<u>'05년</u>	<u>'06년</u>
11명	7명	12명

○ '06년 증가율
= (12명 - 10명*) / 10명 = 20%

* '05년에 최소고용기준인 10명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7명 대신
10명을 적용하여 계산

1-⑧ 실제 고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?

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및 4대보험료 납부 등에 의함

<참 고> 4대보험 부과기준 등

구 분	고용보험	산재보험	국민연금	건강보험
적용대상	전사업장	전사업장	전국민	전국민
보험료 부과기준	임금총액	임금총액	표준소득월액	○지역가입자 : 소득·재산· 자동차 등 ○직장가입자 : 보수총액
평 균 보험료율	1.45% (근로자 0.45% 사업주 1.0%)	1.49% (사업주 전액)	9.0% (직장: 근로자, 사업주 1/2씩 지역: 본인이 전액 부담)	4.21% (직장:근로자, 사업주 1/2씩 지역: 본인이 전액부담)

2.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

2-① 분사란 무엇인가?

☐ 기존회사의 일부 사업부문 또는 자산을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·직원 등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

○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

①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

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

③ 분사모기업이 분사회사 지분을 30%*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

*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기준

☐ 분사모기업의 요건

○ 법인사업자로 한정

○ 고용유지요건 : 분사일 전후 3개월간 분사기업으로 이동한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

3.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

3-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은?

☐ 모든 업종. 다만, 아래 업종은 제외

① 소비성 서비스업(조특법 §136)

- 호텔업 및 여관업(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)
-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단란주점영업(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·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)
- 무도장운영업·도박장운영업(관광진흥법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카지노 제외)
-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

②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 타법에서 규제하는 업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

- 사설학원, 비디오방, 노래방, 티켓다방, 점술업, 대부업, 부동산업(관리·평가업 제외)

3-②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구체적인 내용은?

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		지원되는 업종
• 소비성 서비스업		
호텔업	일반호텔 등	관광호텔
여관업	여관, 여인숙, 모텔 등	콘도, 청소년수련원, 민박, 유스호스텔
일반유흥주점업	요정, 룸싸롱, 바등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	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
무도유흥주점	카바레, 나이트클럽, 극장식 주점클럽 등	소주방, 호프집, 막걸리집, 토속주점
무도장운영업	무도장, 댄스교습소, 댄스홀, 콜라텍 등	
도박장운영업	경마마권발행소, 카지노, 슬롯머신, 카드게임등 도박시설 운영하는 산업활동	복권판매소, 폐광지역 카지노
	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	
• 풍속영업규제법,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대상		
비디오방, 노래방, 티켓다방		
• 기 타		
사설학원, 점술업, 대부업, 부동산임대업, 부동산공급업, 부동산중개업		부동산관리업, 부동산평가업

3-③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계산사례

□ 직전1년 평균 상시근로자수(3월 이상 고용)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상시근로자 추가고용시

* 직전1년평균 상시근로자수

= (직전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) ÷ (직전과세연도 월수)

□ 1년에 법인세를 2,800만원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명의 근로자를 추가고용하는 경우

○ 1,000만원(10명 × 100만원)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1,800만원만 납부

3-④ 창업하거나 폐업한 기업에 대한 적용은?

☐ 창업연도에는 직전과세연도 고용인원을 0으로 봄

☐ 폐업연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

3-⑤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세액감면제도와 고용증대
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?

☐ 납세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, 두 개의 제도를
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음

3-⑥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
두가지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?

☐ 증가한 인원수 만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고

○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을 인원수로 환산하여 1인당 50만원의 공제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음

5.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

5-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무엇인가 ?

-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명목상 회사(paper company)

* 프로젝트 : 설비투자, 사회간접시설관련, 주택건설, 자원개발등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

⇒ 법인세법 § 51의2 6호 및 동법시행령에서 설립 및 운영요건 규정

6.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

6-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?

<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지원제도>

☐ R&D세액공제

* 중소기업 : ①·②중 선택, 일반기업 : ②만 적용

① 당기분 R&D비용 15% ② 4년평균 R&D비용 초과분 50%(일반기업 40%)

○ 최저한세 배제범위

- 중소기업 : R&D세액공제액 전액

- 일반기업 : 석·박사 연구원인건비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

☐ 법인 공장및본사 수도권외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

*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·본사 수도권외이전시 7년감면(5년 100%, 2년 50%)

☐ 영농·영어조합법인 법인세면제

* 농업소득 전액 및 농업외소득중 조합원수×1,200만원

☐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

* 5년 100%, 2년 50%

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등 법인세 감면

* 5년 100%, 2년 50%

7.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

7-① 문화사업준비금이 적용되는 문화산업은 ?

- ☐ 영화산업, 공연산업, 음반제작업, 게임소프트웨어산업등이며
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

7-②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투자를 할 경우 세제상 혜택은 ?

☐ 사례

- 2004년 소득 100억원 발생, 준비금 30억원 설정
- 2005년 문화사업에 30억원 투자

☐ 세금혜택(과세이연)

- 2004년 30억원 손금인정
- 200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익금산입

8.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 확대

8-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란 무엇인가?

- 기금설립 : 1973.3월(근거법 : 문화예술진흥법 §17)
- 기금조성 : 자체사업수입, 여유자금 회수, 개인등의 기부금
- 기금용도 : 문화예술창작 및 보급사업, 문화예술인 후생 복지 사업등
- 2004년 사업비 : 271억원

8-②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확대되는 문화 예술단체의 범위는?

☐ 지정기부금 단체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 예술법인·단체(비영리법인)

예) 예술의 전당, (재)정동극장, (재)서울예술단, (재)한국 문화재단 등

8-③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
무조건 기부금 한도가 8%로 확대되는가?

- 반드시 8%로 확대되는 것은 아님
- 문화단체에 1% 기부시 : 전체 한도 6%(1% + 5%)
3% 8%(3% + 5%)
5% 8%(3% + 5%)

8-④ 소득금액의 50%범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
인정받는다는 의미는?

- 기부금액이 소득금액의 50%보다 적을 경우 모두 손금
(비용)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임
- 기부금액의 50%를 손금(비용)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는 아님

10. 연로자·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

10-①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천만으로 확대한 이유는?

☐ 연로자·장애인·독립유공자 등의 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

○ 이들의 생활안정을 다소라도 지원하려는 것임

10-② 생계형 저축의 가입연령을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
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?

□ 생계형 저축의 가입연령을

-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개시 연령(60세),
소득세법상 노령자 부양가족공제 연령(남자60세),
일반적인 정년기준(60세) 등에 맞추으로써
- 노령층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와 조화를 도모하고
퇴직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상실한 계층이
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 하향조정

10-③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
하향 등으로 늘어나는 세제 혜택은?

□ 금번 조치로 60세이상인 노인부부(2인가족)의 경우 연
4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지원 효과 발생

<사 례> : 60~64세 노인부부의 경우

⇒ 연 45만원 추가지원 효과

현 행	개 정
비과세 0원	비과세 45만원 6천만원(3천만원×2)×5%×15%

10-④ 현행 세금우대저축상품으로 무엇이 있는가?

□ 비과세 상품 : 8종, 10%분리과세 상품 : 1종

구분	저축명	특례 요건	지 원 내 용
비 과 세	장기주택 마련저축	• 18세 이상 • 무주택자세대주 • 85㎡ 이하 주택소유세대주 • 분기300만원 • 7년 이상	• 비과세 • 불입액의 40% 소득공제 (300만원 한도) *적용시한: '06.12.31가입분까지
	연금저축	• 18세 이상 • 분기300만원 • 10년 이상	• 소득공제 : 240만원한도 • 연금수령시 과세
	조 합 등 예 탁 금	• 조합원, 준조합원 · 회원등 • 2천만원	• '04. ~ '06 : 비과세 • '07 : 5% • '08부터 10%분리과세
	조 합 등 출 자 금	• 조합원, 회원등 • 1천만원	• 비과세
	장기저축성 보험	• 개인 • 10년 이상	• 비과세
	생계형 저축	• 노인(65세), 장애인 등 • 2천만원	• 비과세
	농어가목돈 마련저축	• 2ha또는20t이하농지,선박 소유농어민 • 월 12만원 • 3년, 5년	• 비과세 *적용시한: '06.12.31가입분까지
	장기주식형 저축	• 개인 • 8천만원이하 • 1년	• 비과세 *적용시한: '05.12.31발생소득까지
저 울 과 세	세금우대 종합저축	• 개인 : 4천만원 • 노인(남60세, 여55세) 등 : 6천만원 • 미성년자 : 15백만원 • 1년 이상	• 10%분리과세

10-⑤ 노인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?

구 분		내 용	관련조항	
세 제 지 원	직 접	경로우대자(65세이상) 1인당 연100만원씩 추가공제 단, 70세이상은 연150만원	소득세법	§51①1
		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		§52①3
	지 원	65세이상 노인에 대한 2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소득세 비과세	조세특례 제 한 법	§88의2
		65세이상 노인의 6천만원이하 세금우대 종합저축 10%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		§89①3
	간 접 지 원	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	소득세법 시 행 령	§79-2①2
		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법인세법상 지정 기부금 인정 (5%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)	법인세법 시 행 령	§36①1
		노인복지시설 투자금액 세액공제(100분의 7)	조세특례 제 한 법	§94①4
		노인의 여가선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· 종합토지세 ·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	지방세법	§271②

11. 아파트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11-①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?

□ 17대 개원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

☞ 시행일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(2004.1.1~6.30)부터 적용

11-② 부가가치세 면제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가?

□ 전국 공동주택 600만호중 400만호가 면제혜택을 봄

<전국 공동주택 현황('02년말)>

(단위 : 천세대)

계	분양주택		임대주택	기타 (연립등)
	자치관리	위탁관리		
6,133 (100%)	1,651 (26.9%)	3,102 (50.5%)	874 (14.2%)	506 (8.4%)

※ 임대주택은 대부분 위탁관리

※ 위탁관리 공동주택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('05.1.1부터 과세) : 약 80만호

11-③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세금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가 ?

- ☐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연평균 23천원 (월 평균 1,920원)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됨
- ☐ 또한, 부가가치세를 경비원에 전가시키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조정되었던 경비원의 급료가 원래대로 환원 (67만원 → 75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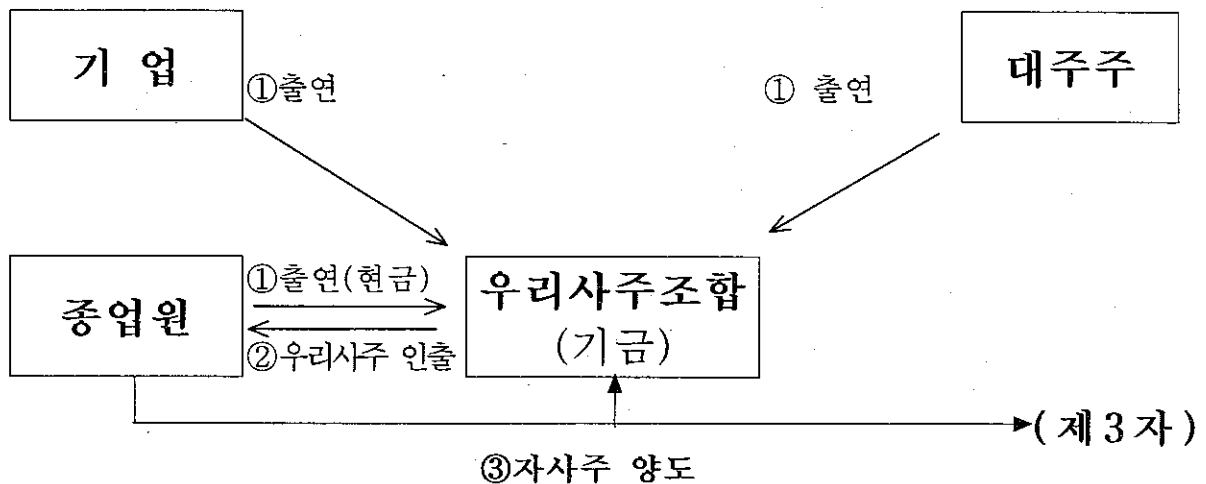
11-④ 2004.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아파트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?

- ☐ 환급받을 수 있음

- 경비업체 등이 이 법 시행후 1개월내에 환급신청하면
세무서장은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

12.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

12-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체계



① 기금 출연시 : 기업의 순금산입, 종업원 소득공제(년간 400만원)
대주주의 기부금 소득공제(30%)

② 우리사주 인출시 : 근로소득세 과세

- 3년 이내 인출시 : 종합과세(9%~36%)
- 3년 이후 인출시 : 인출금의 50% 비과세, 나머지 종합과세

③ 우리사주 양도시

- 제3자에게 양도시 : 과세(현행과 동일)

- **퇴직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양도시 : 비과세**



이번 개정안 내용